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 1. 26.)

조례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태 정]

목 차

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3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 11.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 11.

2. 개정이유

-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안전도시사업 중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7호)
 - 세계보건기구(WHO)안전도시 인증 공인기간 만료('15. 3월)
- 나.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 조치: '16년도 예산 2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12. 23. ~ 2016. 1.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제7호[사업의 범위]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 삭제

- **안 제5조의 2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기관에서 독립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WHO 명칭 공식 표기 제한 등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0347호, 2010.6.8., 전문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15.7.24.>

□ 「상법」

[시행 2015.3.12.] [법률 제12397호, 2014.3.11., 일부개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등 보험관련 기본현황

○ 보험가입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보장범위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애

▶ 대중 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 보험지급 및 문의

- 청구시기: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구비서류: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 양식 이용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보험사에 문의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 11.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 11.

2.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요금 납부방법 개선,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안 별표 2, 별표 4)
 - 업종별 사용료 20.9%, 구경별 기본요금 15.2% 인상률 반영
 -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별표 7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 ~ 3급)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나.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안 제32조의2)

-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

다.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안 제34조)

- (현행) 체납액의 3%, 월할계산 ⇒ (변경) 2%, 일할계산

라. 규제 삭제함

-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1호)
- 법령위임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안 제45조, 별표 5)
 -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준용 내용 삭제(안 제49조제1항 단서)
 - 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조항에서 “과태료” 용어 삭제(안 제5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표준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표준급수조례」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16년도 예산 7,746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5. 12. 10. ~ 12.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1호 서식 성별 추가함)

5. 검토의견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요금 납부방법 개선,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9호[정의]에서** 공업용수의 용어를 삭제함

-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의 제1항 제1호에서**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단서조항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함

-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의 제2항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함

- **안 제27조제1항(요금) 안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관련한 상수도
 요금은 별표2 업종별 요금표와 별표4 구경별 기본요금과 같이
 인상함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 가(원)	현 행	증감
가정용	1 ~ 20	700	530	△170
	21 ~ 30	920	700	△220
	31이상	1,210	920	△290
일반용	1 ~ 30	800	665	△135
	31 ~ 50	960	800	△160
	51 ~ 100	1,120	930	△190
	101 ~ 300	1,290	1,070	△220
	301이상	1,450	1,200	△250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810	620	△190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밀리미터)	금 액 (원)	현 행	증감
13	890	750	△140
20	2,490	2,110	△380
25	4,000	3,390	△610
32	7,110	6,040	△1,070
40	12,000	10,190	△1,810
50	18,390	15,630	△2,760
75	44,600	37,910	△6,690
100	76,050	64,640	△11,410
150	165,700	140,840	△24,860

- **안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의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안 제34조[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의 체납액의 가산금을 월 3/100으로 징수하였으나, 체납일수에 따라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로 일할계산 산정방식으로 개선함
-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서**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별표7을 신설함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 사용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37조제5항요금 등의 감면** 요금을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
 - **안 제37조제6항요금 등의 감면**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
 - **안 제4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건당 20만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선함
 - **안 제45조과태료 등** 법령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조항 삭제
 - **안 제49조제2항[이의신청]**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은 법령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단서조항 삭제
 - **안 제50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수수료, 과태료 용어 중 과태료를 삭제함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제87조(과태료) 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6.8.>
- 3의2. 삭제 <2011.7.28.>
- 3의3. 삭제 <2011.7.28.>
- 3의4. 삭제 <2011.7.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

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⑤ 삭제 <2010.5.25.>

⑥ 삭제 <2010.5.25.>

[법률 제8370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5.14.]

[별표 5] <개정 2014.6.3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2호	200	250	300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3호	300	300	300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2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3호의2	300	300	300
아.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3호의3	300	300	300
자.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차. 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의2	300	300	300
카.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의3	300	300	300
타.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	법 제87조제3항제4호			

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 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파.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5호	200	250	300
하.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거.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6호	10	50	100
너.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더.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8호	50	70	100
러.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6호	200	250	300

<p>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p>	<p>법 제87조제2항제 7호</p>	<p>300</p>	<p>300</p>	<p>300</p>
<p>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87조제3항제 9호</p>			
<p>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100</p>	<p>100</p>	<p>100</p>
<p>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50</p>	<p>70</p>	<p>100</p>

□ 「표준급수조례」

[개정 2014.12.18.]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1.12.21>

② <삭제>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도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0.7.2>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5.6.30.] [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 ⑤ (생략)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 11.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 11.

2. 개정이유

-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

- 하수도 사용료 31.3% 인상률 반영(안 별표 1)
-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26조, 별표 7)

나. 규제 완화함

-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안 제16조의2)
 - 요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
-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안 제29조)
 - (현행) 체납액의 3%, 월할계산 ⇒ (변경) 2%, 일할계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5. 12. 10. ~ 12. 3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 요금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5조제2항[공공하수도 사용료]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로 인상함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 (원)	현행	증감
가정용	1 ~ 20	<u>160</u>	<u>101</u>	<u>△59</u>
	21 ~ 30	<u>220</u>	<u>136</u>	<u>△84</u>
	31 이상	<u>300</u>	<u>182</u>	<u>△118</u>
일반용	1 ~ 30	<u>160</u>	<u>120</u>	<u>△40</u>
	31 ~ 50	<u>200</u>	<u>153</u>	<u>△47</u>
	51 ~ 100	<u>250</u>	<u>186</u>	<u>△64</u>
	101 ~ 300	<u>290</u>	<u>215</u>	<u>△75</u>
	301 이상	<u>350</u>	<u>265</u>	<u>△85</u>
산업용	1톤당	<u>160</u>	<u>120</u>	<u>△40</u>

- **안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안 제26조제1항감면**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별표7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 개정함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다.

- **안 제26조제2항감면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 신설
 - **안 제29조가산금에서** 공공하수도사용자 등의 체납액의 가산금을 월 3/100으로 징수하였으나, 체납일수에 따라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로 일할계산 산정방식으로 개선함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15.6.4.]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하수도법시행령」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5.6.30.] [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 ⑤ (생략)